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장종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481

발의연월일: 2024. 9. 2.

발 의 자:장종태・이재관・김 윤

이병진 • 조인철 • 박지혜

강준현 • 박희승 • 임미애

서영석 • 이재강 • 장철민

이기헌 • 황정아 • 민형배

문진석 · 김남희 · 이수진

의원(18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시체 일부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 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·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하지만, 최근 필라테스 강사 등을 대상으로 일정액의 참가비를 받고 시체 해부를 강의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그 관리가 적정하게 이루 어지지 않고 있음.

이에 의과대학 및 종합병원의 장에게 매년 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, 이의 지원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용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9조의10 및 제9조의11 신설).

법률 제 호

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9조의8제2호를 삭제한다.

제3장에 제9조의10 및 제9조의11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9조의10(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에 관한 보고) ①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매년 시체의일부를 이용한 연구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의 내용·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- 제9조의11(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 등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9조의 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 간 협력 업무 및 제9조의10에 따라 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에 관한 보고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정보 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여야 한다.
 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의 운영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 - ③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한다.

제21조제1항에 제1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의4. 제9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• 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9조의8(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 제9조의8(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 부의 제공 관리) 보건복지부장 부의 제공 관리) -----관은 시체의 일부의 제공에 관 한 사항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 1. (생 략) 1. (현행과 같음) 2.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 <삭 제> 를 받은 기관 간 협력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・관리 및 활 용 촉진 3. ~ 5. (생략) 3. ~ 5. (현행과 같음) <신 설> 제9조의10(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에 관한 보고) ① 제9조의4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 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매년 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 구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의 내용 •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다.

제21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~ 1의3. (생 략) <신 설>

제9조의11(정보시스템의 구축・ 운영 등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 간 협력 업무 및 제 9조의10에 따라 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에 관한 보고 업무 의 지원을 위하여 정보시스템 을 구축・운영하여야 한다.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시스 템의 운영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은 정보시스템의 운영에 소요 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 ③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한다. 제21조(과태료) ① -----

2. ~ 4. (생 략) 2. ~ 4. (현행과 같음)	
② (생 략) ② (현행과 같음)	